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중

1. 의결주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14개 물품 중 서민생활물가의 안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옥수수 등 64개의 물품은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탄산리튬 등 12개의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6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할당관세의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닭고기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매니옥칩과 설탕에 대하여는 2024년 6월 30일까지 0%의 할당관세 및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10%,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천연가스(LNG), 나프타 제조용 원유, 조주정 등 11개 물품에 대하여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료용 옥수수 등 62개 물품의 경우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11.22.~11.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5”를 “별표 1부터 별표 4”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5부터 별표 1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에 따른다.

[별표 1]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포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207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 과 식용 설육(胛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207	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 로 한정한다)		0	
0207	14	절단육과 설육(胛肉)(냉동한 것 으로 한정한다)			30,000톤
		1. 절단육 2. 설육(胛肉) 나. 기타		0 0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胛肉)·피·곤충			
1602	3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 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	3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의 것으로 한정한다] 으로 만든 것	삼계탕 이외의 것	0	

[별표 2]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포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 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찢 것, 성 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8	1	알의 노른자위			
0408	1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 쿠스 (<i>Gallus</i> <i>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50,000톤
0408	19	기타	닭[갈루스 도메스 티쿠스 (<i>Gallus</i> <i>domesticus</i>)종으로 한 정한다]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0408	9	기타			
0408	9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 쿠스 (<i>Gallus</i> <i>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408	99	기타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2	1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	11	건조한 것	식품 원료용의 것	0
3502	19	기타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0714		매니옥(manioc)· 칩뿌리· 살렙(salep)·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 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 괴경(塊莖)[얇게 썬 것이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	1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2. 건조한 것			
		가. 칩(chip)	주정용	0	53,000톤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0901	1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	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수입 전량
0901	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0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1	견과류·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	11	땅콩	피넛 버터를 제외하며, 가공용으로 한정한다	10	10,000톤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			

		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	1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	11	조유(粗油)		
		1. 해바라기씨유	0	
1512	19	기타		수입 전량
		1. 정제유(精製油)		
		가. 해바라기씨유	0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	1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701	12	사탕무당		
		1.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0	
		2.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0	
1701	13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0	수입 전량

1701	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1.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0	
		2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0	
1701	9	기타		
1701	91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0	50,000톤
1701	99	기타	0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	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조주정(粗酒精)	0	86,000 킬로리터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304 호나 제 2305 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 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	6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사료용	0	25,000톤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1.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100,000,000 배럴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2.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20,000,000 배럴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p>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p> <p>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p> <p>자. 기타</p> <p>2. 역청유(瀝靑油)</p>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0	수입 전량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0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2	프로판	0	수입 전량
2711	13	부탄	0	

[별표 3]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포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714		매니옥(manioc)· 칩뿌리· 살렘 (salep)·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 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 (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 괴경(塊莖)[얇게 썬 것이나 펠릿 (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	10	매니옥(manioc) [카사바 (cassava)] 2. 건조한 것 가. 칩(chip)	주정용	10	53,000톤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 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	9	기타			
1701	91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 된 것		5	50,000톤
1701	99	기타		5	

[별표 4]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포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301		활어			
0301	9	그 밖의 활어			
0301	92	뱀장어[양귀라(<i>Anguilla</i>)속] 2.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3	50톤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유장	사료용	0	

		2. 변성유장			
		가. 유장에서 유당(乳糖)·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1) 유당(乳糖)을 제거한 것, 무기질을 제거한 것, 유장 농축 단백질	사료용	0	20,000톤
		2) 기타	사료용	0	
		나. 기타	사료용	0	
0714		매니옥(manioc)·칩뿌리·살렘(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얇게 썬 것이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	1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2. 건조한 것			
		나. 펠릿(pellet)	사료용	0	수입 전량

1003		보리			
1003	90	기타			
		2. 겉보리	사료용	0	80,000톤
1005		옥수수			
1005	90	기타			
		1. 사료용		0	11,000,000톤
		3. 기타	가공용	0	2,100,000톤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	1	전분			
1108	13	감자로 만든 것	식품용	0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 (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 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 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 료로 한 글루(glue)			190,000톤
3505	1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식품용[덱스트린과 가용성 전분(아밀 로겐)을 제외한다]	0	

3505	20	글루(glue)	식품용	0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	90	기타			
		1.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0	1,200,000톤
1214	90	기타			
		1. 사료용 뿌리채소류		0	
		2. 기타			900,000톤
		나. 기타	사료용	0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기타	사료용	0	
2302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			

		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2	30	밀에서 나온 것	사료용	0	40,000톤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	2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사료용 비트펄프 (beet-pulp)	0	수입 전량
			2. 버섯 재배용 비트 펄프(beet-pulp)	0	25,000톤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 (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 (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	3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1. 사료용		0	70,000톤
2304	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사료용	0	2,000,000톤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	90	기타			
		4. 기타	사료용	0	12,000톤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29	2	형석(螢石)			
2529	22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을 초과하는 것			
		1. 가루		0	20,000톤
2804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	2	희가스(rare gas)			
2804	29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네온	0	수입 전량

			2. 크립톤 3. 크세논		
2825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			
2825	50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2. 수산화구리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827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			
2827	4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2827	41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2. 수산화염화구리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833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	2	그 밖의 황산염			

2833	25	황산구리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09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 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 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아세 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과산화 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 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 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30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 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09	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 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 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 로소화유도체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4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 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			

		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 소화유도체			
2914	7	할로젠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4	7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 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 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젠화 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	3	초산에스테르			
2915	3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초산 아밀, 초산이소아밀, 초산메틸, 초산이소 부틸, 초산2-에톡시 에틸을 제외한다	0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 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 수물(無水物)·할로젠화물·과산화 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젠화유			

		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6	1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젠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	1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6	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젠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6	3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젠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	31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0	

		것으로 한정한다)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30	알데히드·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8	9	기타		
2918	9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9	90	기타			
		1. 인산에스테르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1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11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0		

		한정한다)			
2920	2	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2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	4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	42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1	43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0	

		한정한다)			
2921	4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	50	아미노-알코올페놀·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기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4	1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	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포스파미돈(ISO)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2924	1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2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	21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25	알라클로르(ISO)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29	기타			
		3. 기타			
		다.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5	1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	1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5	2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	2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8	00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0		유기-황 화합물			
2930	20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1. 티오카르바메이트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 디티오카르바메이트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0	30	티우람모노술폰파이드·티우람디술폰파이드·티우람테트라술폰파이드	티우람디술폰파이드	0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2930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	4	비할로젠화 유기인 유도체			
2931	4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0	

2931	5	할로젠화 유기인 유도체	한정한다)		
2931	54	트리클로르폰(ISO)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5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2	1	붙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2	20	락톤			
		10.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2	9	기타			
2932	9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1	불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11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2	불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2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3	불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3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4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3	4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5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5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6	불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69	기타			
		3. 기타			
		나.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7	락탐			
2933	79	그 밖의 락탐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1-비닐-2-피롤리돈을 제외한다	0	
2933	9	기타			
2933	9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헥테로고리 화합물		
2934	10	불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2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9	기타		
2934	9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5		술폰아미드			
2935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41		항생물질			
2941	20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41	30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41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 지에 상관없으며 제 34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4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	42	비이온성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808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8	9	기타			
3808	91	살충제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808	92	살진균제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808	93	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	제초제, 식물성장조절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9	기타			
3824	99	기타			
		2. 향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833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	2	그 밖의 황산염			
2833	29	기타			
		2. 황산코발트			
		가.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바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6	9	기타			
2836	91	탄산리튬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	6	아망간산염·망간산염·과망간산염			
2841	69	기타	아망간산염(이차전지 제조용 양극활물질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841	90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리튬코발트산화물(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10,000톤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	5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	59	기타	자일릴렌다이아민(XDA)[자일릴렌다이소시아네이트(XDI)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 비료나 비료제조용		0	수입 전량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1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	11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 기타	0	수입 전량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 3203 호·제 3204 호·제 3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	1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	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 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3	수입 전량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		

		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 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 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품은 제외한다]			
3403	9	기타			
3403	91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 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탄소섬유 제조용	0	수입 전량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 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 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 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	10	인조흑연			
		1.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 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 한 페이스트(paste)		0	수입 전량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 로 한정한다)			
3815	1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3815	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 속화합물의 것	백금촉매(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2톤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9	기타			
3824	99	기타			
		3.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흑연화합물(이차 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 전해액과 전해액 첨가제(이차 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	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0	91,800톤
3901	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펄프의 것이 아닌 것	0	36,000톤
3901	4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농업용	0	18,000톤

3901	90	기타	휴대폰 카메라 렌즈 제조용		수입 전량
3907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	40	폴리카보네이트	휴대폰 카메라 렌즈 제조용	0	수입 전량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	1	셀룰러			
3921	1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가.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6. 기타	이온교환막(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4	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104	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1	수입 전량
4104	19	기타	1	
4104	4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104	4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1	
4104	49	기타	1	
5002	00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1. 백잠사(white silk) 가. 20 데시텍스 이하인 것 나. 20 데시텍스 초과 25.56 데시텍스 이하인 것	0 0	200톤

		다. 25.56 데시텍스 초과 28.89 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라. 28.89 데시텍스 초과 36.67 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마. 36.67 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0	
		2. 옥사(doupion silk)	0	
		3. 기타	0	
5504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 [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	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 이형단면인 것	0	
		2.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0	수입 전량
		3. 기타	0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	1	탄소섬유, 비(非)전기용의 탄소 섬유 제품, 비(非)전기용의 그 밖의 흑연 제품이나 탄소 제품			
6815	13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	연료전지 전극기재 제조용	0	수입 전량
7006	00	제 7003 호·제 7004 호·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2.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0	수입 전량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4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7112	9	기타			
7112	99	기타			
		1. 잔재물의 것	구리 전해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귀 금속 및 희소금속 원재료용	0	수입 전량
7202		합금철(ferro-alloy)			
7202	4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	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를 초과하는 것		1	수입 전량
7202	49	기타		1	
7202	60	페로니켈(ferro-nickel)		1	수입 전량
7202	9	기타			
7202	93	페로니오븀(ferro-niobium)		0	수입 전량
7502		니켈의 괴(塊)			
7502	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2. 기타		0	수입 전량
7606		알루미늄의 판(sheet)·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6	1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			
7606	1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기자동차 이차 전지 케이스 제조용	0	24,000톤
			2. 자동차 차체 제조용(미국 알루미늄 협회 표준 규격 A6000 계열로 한정한다)	0	8,600톤
7801		납의 괴(塊)			
7801	10	정제한 납			
		2. 기타	자동차용 납축전지 제조용	0	11,000톤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	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1. 괴(塊)		0	수입 전량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	30	압연기용 롤	단조제의 것(제철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03	00	부분품(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발전기·발전세트의 것			
		나. 기타	전극막 접합체(연료 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8505	1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	11	금속으로 만든 것	영구자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 모터 제조용 부품으	0	4,264톤

			로 한정한다)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 없다)			
8507	90	부분품	전극(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	1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8514	19	기타	소성로 또는 탄화로(이차전지, 연료전지 또는 탄소섬유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			

		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	4	계전기(繼電器)			
8536	41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고전압 릴레이(환경친화적 자동차용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의 제어·연결용으로 한정한다)	0	1,408톤
8536	49	기타	고전압 릴레이(환경친화적 자동차용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의 제어·연결용으로 한정한다)	0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5	90	기타	분리판(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u>별표 1부터 별표 15</u>까지와 같다</p>	<p>----- ----- ----- <u>별표 1</u>부터 <u>별표 4</u>-----.</p>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연 락 처	(044) 215 - 4431